

#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대비한 제조물 책임 및 안전에 관한 연구

변 승남, 이 동훈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라 당면하게 될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이라는 법률적 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의 제품안전 정책을 분석하여 OECD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둘째,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인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OECD 자체의 통일된 제조물 책임법안은 없고 가입국들이 독자적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었으며 회원국에 따라 세부규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들을 국제 기준으로 통일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제조물 책임법 또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품안전 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제품 사용중 발생하는 각종의 안전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정보수집 체계를 통하여 엄격한 제품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한 광범위하고도 진보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경우, 선진 회원국의 수준에 부합되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및 시행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1. 연구배경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쟁촉진과 시장자유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입에 따른 여러 경제제도의 변화에 큰 부작용이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에 부합되는 각종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1]. 이와 같이 요구되는 여러 제도들의 정비중 우리나라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중의 하나로 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에 관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실제 OECD는 소비자 정책위원회(committee on the consumer policy)를 두고 회원국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소비자 정책들을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따라야만 한다.

OECD 회원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은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 이하 PL법)에 의한 사후정책과 제품안전(product safety)에 의한 예방대책의 두가지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PL법이란 제품의 결함(defect)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법적 제도로서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선진화된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6, 14, 15]. 실제 소비생활에서 결함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PL법은 결함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정신에 기초한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책임의 예방대책인 제품안전 정책은 국민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제조자와 판매자가 안전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유통시켜야 한다는 근본적 취지를 담고 있다 [9, 11, 12]. OECD 회원국들은 제품안전을 위해 제품안전법(product safety law)과 같은 법률적 정책뿐만 아니라 각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설정 및 인증제도를 통한 행정적인 정책들을 수립, 실시하고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소비자 보호정책은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12]. 만약 수출한 제품이 수입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제소를 당하여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시주에 유통되고 있는 동 제품을 즉각 회수해야하고 최악의 경우 수출기업이 도산하는 사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PL법은 기존의 쿼터설정, 반 덤핑 관세부과 등과 같은 직접적인 수입 규제와는 달리 안전기술의 수준이 떨어지는 수출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종의 비관세 무역장벽(non-tariff trade barrier)으로 작용하고 있다 [4, 10, 12, 13, 14]. 특히 국민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해외무역 의존도가 OECD 회원국들의 평균치인 31.2%을 훨씬 상회하는 57.1%나 차지한다는 사실[3]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으로 직면할 수 있는 제조물 책임 및 제품안전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 연구로 수행해야하는 OECD 회원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 및 제품안전 정책의 시행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 2. OECD 회원국의 제조물 책임법

1965년 미국에서 시작된 PL법은 “소비자 제일주의”와 “소비자 보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종의 특별법이다. 이러한 PL법은 현재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지난 30여년 간의 연구를 거쳐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회원국중 가장 강력하고도 독자적인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회원국과 일본 등은 1985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 EC) 이사회에서 제정한 제조물책임 법안 지침안(EC product liability directives)을 근간으로 하여 자국의 PL법을 제정하였다 [6]. EC의 PL 지침안은 결함 제품의 책임에 관한 EC 가맹국들의 법률, 규칙 등에 관한 지침서로서 EC 시장 통합을 지향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EC 가맹국들이 이러한 지침안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산업 체계와 형편에 따라 수정된 법안을 제정, 발전시키고 있다.

회원국들의 PL법 적용은 과실입증(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 보상체계(no-fault compensation system) 등 세가지 원칙에 기준하여 시행되고 있다. 과실입증이란 제품의 사용자가 불량 및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의 과실(manufacturer's conduct)을 입증하여야만 법적 보상을 받을 있다는 적용 원리이다. 이에 비하여 엄격책임은 소비자가 제품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해당제품의 결함(product defect)만을 입증하면 쉽게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줄인 소비자 중심(proactive to consumers)의 원칙으로 PL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무과실 보상체계란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이나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나 보험에 의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적용 원리이다.

각종 소비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들이 OECD 회원국마다 조금씩 다른 데,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경우, 무과실 보상체계만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회원국들은 이 외에도 과실입증이나 엄격책임 등과 같은 PL법 적용원리와 함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사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권리를 더욱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대부분 회원국들이 엄격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PL법을 시행하고 있다.

진술한 바와 같은 PL법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므로써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소송이 빈발해 지면서 제조업자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거나 소송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파생되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엄청난 PL 배상금으로 인하여 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나타났다. 따라서 PL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조업자의 과도한 피해나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품사용자의 책임을 부여하거나 개발위험의 항변(state-of-art defence), 배상금의 상한선 설정 등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되었다. 제품사용자의 책임 부여는 독일과 같이 PS법을 과실입증의 원칙 하에서 시행할 경우, 제품사용자의 과실 및 실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 인정되어 제조업자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엄격책임을 법의 적용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 회원국들은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일부 있으면 사용자의 비교과실(comparative fault)을 인정, 제조업자의 책임을 사용자의 과실 크기만큼 경감해주고 있다.

개발 위험에 대한 항변이란 제조업자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면책사유는 주로 과실입증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서 적용하는 보완책이나 OECD 회원국의 경우 핀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미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채택되고 있다(표-1).

배상액 상한선 설정의 경우 EC의 PL 지침안은 책임한도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배상액의 상한선이 없을 경우, 제조업자가 가입하는 PL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키게 되므로써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EC 가맹국들과 일본, 미국 등은 배상액의 상한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들 나라중 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awards) 제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액 이상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과도한 소송 배상금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도산이 날로 증가하자 배상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PL 개혁법안이 상정중에 있다 [2].

표-1. 개발위험의 항변 및 배상액의 상한선 적용 실태

회원국	개발위험의 항변	배상액의 상한선	회원국	개발위험의 항변	배상액의 상한선
Austria	O	X	Japan	O	X
Belgium	O	X	Luxemburg	X	X
Denmark	O	X	Netherlands	O	X
Finland	X	X	Norway	O	X
France	O	X	Portugal	O	O
Germany	O	O	Spain	X	O
Greece	O	O	Sweden	O	X
Ireland	O	X	United Kingdom	O	X
Italy	O	X	United States	X	X

(O : 적용하는 경우, X : 적용하지 않는 경우)

### 3. OECD 회원국의 제품안전 정책

소비자에게 제공,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소비자 보호정책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안전하지 못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각종 제도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품의 결함, 안전기준의 미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되므로써 제품의 안전 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기업은 통관거부, 제품회수, PL소송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품의 개발, 설계, 검사, 수송 등 각 단계에서 제품 안전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사용 및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실시하고 SG(safety good)마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EC에서도 시장통합을 앞두고 “제품안전 법안 지침안(product safety regulation directives)”을 마련,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지침 안에는 제품의 안전에 대한 까다로운 정의를 내려 제조업자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제품에 요구되는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을 충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ECD 회원국중 대부분의 유

럽국가들은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에 의해 취해지는 제품안전 정책은 예비정책(preparatory policy), 규정수립 정책(regulatory policy), 감시 및 시정정책(monitoring & corrective action policy) 등 세가지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 3.1 예비정책

예비정책이란 소비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위해제품을 판별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리 및 감독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소비자 위해 정보수집 체계와 제품안전을 담당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 위해 정보 수집 체계는 우선 병원, 소비자보호기관, 제품검사기관 등 여러 정보 보고기관이 제공한 각종 정보를 위해 발생의 빈도, 위해의 정도 및 경위에 대해 제품별로 조사하게 된다. 만약 조사 결과 특정 제품이 위해한 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 규정을 마련하거나 리콜, 제품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OECD 회원국중 대표적인 소비자 위해 정보 수집 체계는 표-2와 같다.

표-2. 소비자 위해 정보수집 체계

회원국	소비자 위해 정보수집 체계
United States	National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NEISS)
United Kingdom	Home Accident Surveillance System (HASS)
Japan	National Injury Reporting System (NIRS) Accident Reporting System (ARS)
Canada	Canadian Accidents Injury Reporting & Evaluation (CAIRE) System
Netherlands	Prive-Ongevallen-Registratie-System (PORS)

제품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경우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아일랜드 등은 단일화된 행정체계 또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하여 일반 제품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소비자 제품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를 설치하여 식료품, 의약품,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 활동들을 감시, 감독하고 있다. 영국도 통상부내에 소비자 안전부서(consumer safety unit)를 설치, 제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반면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전담기구를 편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부서나, 제품안전 관리기관, 소비자보호기관 등을 통하여 미국이나 영국에서 운영하는 전담기구와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제품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는 제품에 따라 각 해당 행정부서로 업무를 분리시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규정수립 정책

OECD 회원국들은 소비자 제품에 대해 법률(legislation)이나 규칙(rule)을 제정, 제품안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표-3).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위해 제품의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제품안전법과 의약품, 식료품, 폭발물, 살충제 등과 같이 특정 제품에 대해 설정한 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각 제품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설정하여 제품안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수입 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수출국의 제품표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국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수입국의 검사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만 한다. 또한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불필요한 중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므로써 상호간의 교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제품기준 및 인증제도를 통일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화 정책은 현재까지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CEN(Comite European de Normalisation), CENELEC(Comite European de Normalisation Electricite) 등과 같은 유럽 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망되었다.

### 3.3 감시 및 시정정책

감시 및 시정 정책은 시장에 유통되는 소비자 제품을 감시하여 만약 소비자에게 위해를 야기시키거나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리콜, 제품회수, 폐기 등을 통하여 위해 결함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나라들은 중앙 행정기관에 의하여 감시 활동을 펴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지방자치 기구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제품의 사용실태는 주로 소비자 위해 정보 수집 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외 소비자고발, 대중매체 또는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수집한 여러 자료를 기초로 조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은 감시활동에 의하여 일단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하다고 판명되면 리콜, 제품회수, 파기 등과 같은 시정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리콜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업자가 자진 회수하여 고쳐주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보상하여 주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위해 제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결함내용과 피해사실, 주의사항, 시정방법 등을 해당기관에 자진해서 통보토록 하고, 우편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해당 제품의 모든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해당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들이 자진해서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제품회수, 파기 등의 강제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결론

국제적으로 소비자 정책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면서 제품의 사용에 대한 인한 소비자 보호와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 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PL법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PL법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상대 교역국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표-3. OECD 회원국의 제품안전 법규

회원국	제품안전 관련 법규
Austral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de Practice Act*</li> </ul>
Can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zardous Product Act*</li> <li>• Food &amp; Drug Act</li> <li>• Explosive Act</li> <li>• Atomic Energy Control Act</li> <li>• Pest Control Products Act</li> <li>• Radiation Emitting Device Act</li> </ul>
F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t on Protection &amp; Information of Consumer*</li> <li>• Civil Code 1382, 1383, 1384</li> <li>• Penal Code 319, 320, 422</li> <li>• Act concerning the manufacturing, packaging, importation &amp; marketing of cosmetics</li> <li>• Act on control of chemical products</li> </ul>
Ja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sumer Product Safety Act*</li> <li>• Law regulating household products containing dangerous substances*</li> <li>• Electrical Appliances Control Act</li> <li>• Gas Industry Act</li> <li>• Law concerning the safety of liquified petroleum gas</li> </ul>
Nor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t relating to Product Control*</li> <li>• Public Hygiene Act</li> <li>• Supervision of Electrical Installation Act</li> <li>• Supervision of Foodstuffs Act</li> <li>• Insecticides Act</li> <li>• Medical Goods &amp; Poisons Act</li> <li>• Flammable Product Act</li> <li>• Marketing Control Act</li> </ul>
Netherla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modities Act*</li> <li>• Pesticides Act</li> <li>• Electricity Decree</li> </ul>
New Zea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ngerous Goods Act*</li> <li>• Safety of Children's Night Clothes Act</li> <li>• Plastic Wrapping Regulation</li> <li>• Fireguard Regulation</li> <li>• Explosive Act</li> </ul>
Swed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rket Act*</li> <li>• Act on Products Hazardous to Health &amp; to the Environment*</li> <li>• Building Act</li> <li>• Building Ordinance</li> <li>• Explosive Goods Act</li> <li>• Ordinance on Flammable Goods</li> <li>• Working Environment Act</li> </ul>
United Kingd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sumer protection Act*</li> <li>• Consumer Safety Act*</li> </ul>
United St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sumer Product Safety Act*</li> <li>• Flammable Hazardous Substance Act</li> <li>•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li> <li>• Refrigerator Safety Act</li> </ul>

(\* : 일반 제품안전법, 그외의 경우 특정 제품에 관한 제품안전 법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체계적인 제품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회원국들은 소비자 위해 정보수집 체계를 통한 제품 사용의 감시체계를 수립하거나 제품안전 담당기관을 설치하여 제품안전법 및 안전기준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시정 정책을 통하여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회원국들의 제품안전 정책에 관한 사전 대응책이 미비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은 리콜, 제품회수, PL 소송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하며 기존의 제품개발 전략들도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대응은 기업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기업의 발전 특히 국제 경쟁력의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에 대비하여 2-3년내에 PL법을 시행하고 리콜제도, 소비자보호 종합 대책 등과 같은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제반 규제와 제품안전 정책 등을 우리나라 경제, 사회제도에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OECD 가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S

1. 동아일보, "OECD의 규제라운드 검토배경과 한국영향", 9월 2일자, 1996.
2. 중앙일보, "미하원, PL법 개혁법안 가결", 5월 17일자, 1996.
3. 한국경제신문, "한국 무역의존도 너무 높다", 7월 22일자, 1996.
4. Abbott, H., "Consumers, Product Safety Standard and International Trade.", Product Liability International, September, 1991.
5. Ashworth, S., "New EC Product Safety Regulations.", Product Liability International, April, 1994.
6. Hodges, C., "Looking at EC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International, September, 1993.
7. Leadley, J. C., "European and Japanese Product Liability: A Legal Comparison.", Product Liability International, March, 1995.
8. OECD, Data Collection Systems Related to Injuries Involving Consumer Products, Report by the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Paris, 1978.
9. OECD, Safety of Consumer Products: Policy and Legislation in OECD Member Countries, Report by the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Paris, 1980.
10. OECD, Recall Procedures for Unsafe Products Sold to the Public, Report by the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Paris, 1981.
11. OECD, Product Safet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Measures, Report by the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Paris, 1987.

12. OECD, Consumers, Product safety Standards and International Trade, Report by the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Paris, 1991.
13. OECD,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Requirements and Their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Working Party on Consumer Safety, Paris, 1995.
14. OECD, Product Liability Rules in OECD Countries, Report by the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Paris, 1995.
15. Ross, K. and Bowbeer, H., "Revision of American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International, May, 1994.